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요건 완화 등 》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73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5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5
-----------------	---

- | | |
|--|----|
| 1.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요건 완화(이개호의원안) | 5 |
| 2.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 정비(남인순의원안) | 14 |

I. 개요

1.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97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6.

(3) 회 부 일 : 2025. 1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200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과 의료 관광객의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증가에 따라 ‘서비스 레지던스’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고, 2013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생활숙박시설이 객실 30호 이상을 보유해야만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개별실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영업 신고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보유자의 약 95% 이상이 1실 또는 2실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 제도가 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임. 현행 제도로 인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거나, 30호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에이전시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4년 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신고기준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2025년 9월까지 지역 여건에 맞춘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음. 이는 2025년 10월에 개최되었던 APEC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 확충 조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까지(2025년 8월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다수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보다는 법률 개정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K-뷰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의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K-뷰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의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으로 정책 적용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부터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고시로 해당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법 영업 감소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5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11. 27.
- (3) 회 부 일 : 2025. 12.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 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등).

Ⅱ. 검토의견

1.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요건 완화(이개호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고시로써 해당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조의3(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예외)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수가 1개 이상인 경우 숙박업으로 신고 할 수 있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숙박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한다.</u>

나. 주요 검토 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이러한 숙박업을 취사시설 제공 여부에 따라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으로 구분함.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 8. (삭 제) ② (생 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는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14. (생 략) 15. 숙박시설 16. ~ 29.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종류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는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 기준에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경우 ①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②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③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생활숙박 시설 소유자는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상태임.

□ 2024년 7월말 기준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12.8만실 중 숙박업 미신고 물량은 5.5만실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생활숙박시설 현황(2024. 7월 기준) >



자료: 관계기관 합동,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2024. 10.

□ 이러한 상황에서 숙박업 미신고 물량의 숙박업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 기준인 객실 수 30개 이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통해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제도권

편입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고, 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부산시('25. 9. 12.)와 인천시('25. 11. 12.)의 경우 각각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였음.

· (부산) ▲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의 명확화, ▲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30개→20개) 완화, ▲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 부산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25.9.12.)
· (인천)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30개→20개) 완화
*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25.11.12.)

- 한편,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에 비해 주차, 복도 폭 등도 완화되어 적용됨¹⁾.

< 공동주택·생활숙박시설 기준 비교 >

구분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종부세	다주택 중과	비과세
양도세	다주택 중과	배제
전매제한	적용	없음
주차기준	세대당 1대	200㎡ 당 1대
복도폭	1.8m 이상	1.5m 이상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미부과

출처: 관계기관 합동,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2024. 10.

1) 이동관,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75호, 2025. 6. 18.

□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기 과열 시기 생활숙박시설이 편법적인 주거상품으로 오용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거 전용을 원천 차단²⁾하는 가운데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대책 경과 >

· ('21) 신규생숙 관리 강화· 기존생숙 용도변경 특례** 등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 발표
* (허가단계)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프론트데스크, 세탁실 등 설치 의무화('21.11~)
(분양단계) 수분양자의 계약 시 숙박업 신고동의서 서명 의무화('21.11~)
(사용승인단계) 허가권자는 수분양자의 서명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21.12~)
** (용도변경 특례) 생숙→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³⁾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1. 10. ~ '23. 10.)
· ('23) 용도변경 특례는 2023년 10월 종료, 이행강제금은 숙박업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하여 2024년 12월까지 추가 유예
· ('24) 관계부처·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법적 사용 지속적으로 유도, '24. 10.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 정부·지자체 간담회, 복지부·소방청 업무협의, 레지던스 연합회 간담회, 사업자 간담회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1객실 단위 생활숙박시설의 여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실증 사업⁴⁾'을 2026년 2월부터 착수할 계획임.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실증 사업계획 >

* 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

- 2) 생활숙박시설도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30실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이 되도록 「건축법」 개정(시행일: 2026. 2. 27.)
- 3) 숙박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4)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규제혁신'의 일종임.

향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 8. (생략)
9.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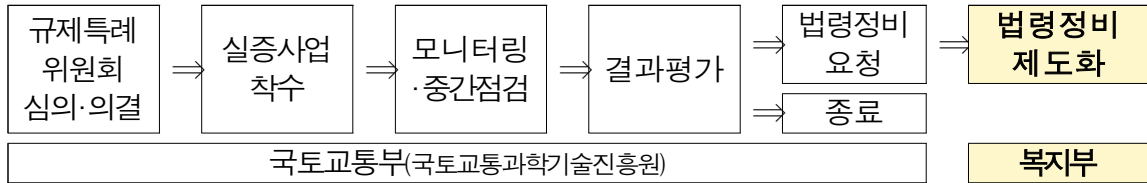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절차**

실증사업신청(기업)→ 주관부처 접수 → 규제 부처 검토 →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의결 → 실증사업 착수 → 모니터링·중간점검 → 결과평가 → 종료 또는 법령정비(제도화, 규제부처)



☐ 사업 개요

- (목적) 1객실 단위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주요내용) 1객실 단위 생숙 영업신고 허용*, 온라인 플랫폼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접객대 대체**(미설치)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객실이 독립된 층 객실 수 30개 이상, 면적이 3분의 1 이상 중 하나 충족 필요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신분·출입 확인 등

☐ 사업 대상

- (플랫폼 운영자(실증신청기업))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객실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 비대면 체크인 등 통한 PMS(Property Management System) 기반 서비스 구축 및 제공
- * 모바일 체크인, 입·퇴실 기록 자동화, CCTV를 통한 신분 인증·미성년자 혼숙 차단 등 온라인 기반 무인 접객시스템 도입 등
- (1객실 소유자(실증특례수혜자)) 1객실 생숙을 직접 운영하며, 특례 규정(생숙 설비기준(30객실 이상) 및 접객대 설치) 외 모든 숙박업 운영자로서의 책임 부여

*** 향후 일정**

- 부가조건 협의('25.12.) 및 심의위원회 상정('26.1.)
- 실증사업 착수('26.2. ~)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신고가 곤란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실증 특례’ 사업을 통하여 공중위생 및 안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 분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	• 신고가 곤란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실증 특례 사업을 통하여 공중위생 및 안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
문화체육관광부	• 기존 관광숙박업(호텔·콘도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숙박 공급 과잉, 저품질의 숙박시설 난립 우려 *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휴양콘도미니엄 30실 이상 객실 기준 및 각종 부대시설 기준 등 충족 필요
서울특별시	• 1객실 허용 시 공용부분의 위생관리 곤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안전관리 혼선 우려
부산광역시	• 관광특구에 국한하여 숙박업 기준 완화 시 관광특구 이외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객실 수 1실 기준은 주거용 편법 사용 우려 및 행정관리 어려움 제기
광주광역시	• (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찬성) 1객실 이상이 아닌 3객실 이상으로 객실 수 기준을 높여 생활숙박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분별한 영업신고 방지
경기도	• (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찬성) 관광특구를 기준으로 예외를 적용할 경우, 대다수 시·군에서 발생하는 개별분양자의 숙박업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 범위를 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숙박 수요 포함) 등 지자체의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필요
강원도	• 관광진흥 목적과 공중위생 관리 목적 간 조화가 불분명하여 ▲법의 일관성 훼손 및 법령상 규제와의 해석 충돌 발생, ▲행정 효율성 저하 및 행정 집행 부담 증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영업 편의 위주의 규제 완화 - (강원도 동해시) 무분별한 생활형 숙박업 발생으로 공중위생 및 안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미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적용범위의 확대가 가능하여 개정 실익이 없으며, 1객실 이상으로 영업 신고 시 사후관리가 더 어려워질 우려 - (강원도 속초시) 숙박업 영업자의 기본 의무·책임 구조와 근본적으로 상충되고, 기본 관리 체계 유지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공중위생 관련 주요 규제 형해화,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 및 불공정경쟁 문제 심화, 숙박질서 붕괴·민원 급증·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행정부담 과도하게 증가 우려

경상남도	• 숙박업 시설·설비 기준은 숙박업의 기본적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최소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야 할 소규모 영업소 증가로 정기적 위생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효율성 저하 우려
제주특별자치도	• 숙박시설 공급 과잉과 영업자 양산으로 업소 간 경영난 심화, 가격경쟁 과열, 폐업률 증가, 서비스 질 저하 등 우려 • 건물 내 다수의 소규모 숙박업소 난립이 예상되어 투숙객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행정청도 영업주체를 식별·관리하는 데 상당한 행정적 어려움 발생

2.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 정비(남인순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③ (생략)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위생사 국가시험-----수험을-----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제4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은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이 해당 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
- 참고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위생사 국가시험에는 총 39,983명이 응시하였고,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건수는 없음.

< 최근 5년간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 현황 >

회차	연도	시험시행일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행지역
43	2021년도	2021.11.20.	9,302	4,617	49.6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전북 · 강원 · 제주
44	2022년도	2022.11.19.	8,221	5,019	61.1	
45	2023년도	2023.11.18.	7,685	4,013	52.2	
46	2024년도	2024.11.16.	7,610	3,514	46.2	
47	2025년도	2025.11.22.	7,165	3,968	55.4	
계			39,983	21,131	52.8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의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 내 응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보건의료 직역별 응시제한 근거법률 현황 >

직종	응시제한 근거 법령	제한내용	위임
의사	의료법 제10조 (응시 자격 제한 등)	①결격사유자 응시 불가 ②부정행위자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③부정행위자 응시 기회 최대 3회 제한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시험 등 응시 제한) 위반 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약사법 제9조 (응시 자격의 제한)	(제9조) 결격사유자 응시 불가 (제10조) ①부정행위자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위임규정 없음
한약사	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②부정행위자 2년간 응시 제한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응시 자격의 제한 등)	①결격사유자 응시 불가 ②부정행위자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③부정행위자 응시 기회 최대 3회 제한	시행규칙 제10조 (부정 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 위반 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2 (응시 자격 제한 등)	①부정행위자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②부정행위자 응시 기회 최대 3회 제한	시행규칙 제10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위반 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부정행위자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②부정행위자 응시 기회 최대 3회 제한	시행령 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시험의 응시 제한 기준) 위반 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④부정행위자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⑤부정행위자 2회 응시 불가	시행령 제6조의2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부정행위 정의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자격을 세분화하고, 3회의 범위 내에서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건의료 직종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정비 및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국가시험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위생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제고하고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대한위생사협회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1